

# 제반소득의 원천징수 일반절차

## 1. 소득세 원천징수제도

###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 소득발생 원천에서의 징수

세금납부의 방법으로는 ① 납세자의 자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납부, ② 과세권자의 부과세제도 및 ③ 납세자소득에 대해 다른 납세자가 징수하여 대신납부하는 제도의 3가지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세번째의 타인징수 대신납부제도를 세법상 원천징수제도라 부르는데 특히 소득세법상의 개인소득에 대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법상의 소득은 일반개인, 자연인에게 귀속되는데, 대부분의 일반 개인은 중간생산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최종소득 귀속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납세신고의무 정도가 약하므로 소득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적합한 세금을 뺀 후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원천징수제도라 하는데 소득이 발생되는 단계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징수한 후, 나중에 소득수취자가 별도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세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있다.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구분

소득세법 제127조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자유직업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개인 소득자의 가처분소득으로 직접 귀속될 만한 소득이다.

특히 대부분의 개인은 이러한 소득에 대한 특별한 비용이 없으며 사업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납세신고할 의무사항도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하여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73조가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법인은 중간생산자로서 이러한 소득을 받고 이를 재원으로 별도의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은 대부분 자신의 사업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하므로 구태여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는 가처분가능 소득분야

업무수행이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소득 중 별다른 비용이나 원가적 개념이 없고 그 소득수취자가 당해 소득 자체를 즉시 이용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의 수취금액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가 과세기간 동안의 제반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지급자가 소득수취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하여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비교적 작은 조세저항만이 있다.

이러한 가처분소득 혹은 더 이상의 비용과 손실 및 원가가 대응되지 않을 소득을 뽑아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 2) 원천징수제도의 과세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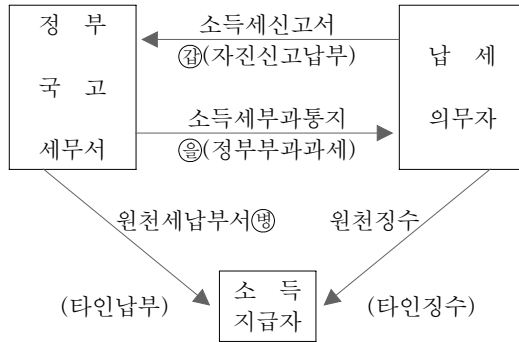
#### 소득세부과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

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창출하여 소득을 받은 자가 자신의 1년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1년단위로 종결된다.

여기서 정부나 관할세무서 등의 과세권자의 세금부과권리와 각 개인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의무가 대응되는데 납세의무자의 세금이 과세권자의 국고에 전달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별하면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 과세권자의 부과과세 및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 등이 있는데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병의 경우는 갑이나 을방식으로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세되어야 할 세금을 소득지급자가 중간에 나서 이를 대행해 주는 것인바, 이는 세무서의 부과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대신 징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이행여부와 세금차이 조정방법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부과된 의무불이행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관할세무서는 원천징수할 세금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추징하며 여기에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까지 부과한다.

세금이 추징된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신이 지급한 소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세액을 되받아 낼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 행사라 한다. 즉, 소득수취자에게 소득세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여야 하나 총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 해당액을 원천징수의무자 자신의 돈으로 냈다면 이만큼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 관할세무서장의 직접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득지급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세금징수 확보가 곤란하다고 관할세무서가 판단하는 경

우 관할세무서는 이러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수취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관할세무서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고, 납세자로부터 과소신고납부 가산세 등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할세무서가 부과세하기 전에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다면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다.

#### 타율적·강제적·사전적 징수납부제도

정부는 소득지급자에게 원천징수규정으로서 원천징수의무 뿐 아니라 소득수취자로부터 소득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데, 원천징수란 소정의 과세기간 종료와 관련없이 소득자에게 이자·배당·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마다 당해 소득수취자의 전체적 과세표준 상황이나 납부의사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급소득으로부터 소득세액을 사전적으로 공제하는 타율적인 납부제도이다.

그런데 종합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제에서 납세의무있는 모든 소득자는 자진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함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자율신고납부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상당부분 배치되는 제도이다.

### 3) 원천징수제도의 종류

#### 예납적·원납적 개념의 구분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종류나 소득수취자의 위상에 따라 완납적인 것과 예납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세의 완납적인 것이 많은 반면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는 예납적인 것이 많다. 왜냐하면 당해 소득수취자가 궁극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에 대부분 소득이 포함되므로 법인세자진신고에 대해 사전에 미리 예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는 세금신고납부의 절차의 편의성과 과세의 신속성을 위해

과세권자가 소득지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의 일부를 위양하는데 불과하며 또한 소득수취자의 과세대상 총액을 소득지급자가 알 수 없으므로 향후에 종합신고납부할 세금을 미리 예정납부한다는 뜻이다. 특히 종합소득신고납부 대상인 소득은 모두 예정납부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에 포함될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 등이 예납적 원천징수소득에 속한다.

그러나 한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 있는 종업원이나 금융소득 종합합산대상이 아닌 장기간 채권의 금융소득 등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완납적 원천징수소득이다.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경우도 일정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되므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지만 규정된 일정금액 이상이면 향후 종합소득합산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예납적인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다.

#### 각 소득별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의 비교

각 소득이나 소득수취자의 상태별로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구분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근로소득	여러 직장에 근무,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도 있는 경우, 퇴직시의 임시 연말정산	하나의 직장에만 근무, 일용 근로자소득, 여러 직장소득을 주된 근무지소득(근 소득지)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한 경우
퇴직소득	동일 연도에 여러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한 연도에 한 직장에서만 퇴직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국내 일반이자·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이익, 대주주배당, 비상장법인배당, 국외이자소득과 배당 등 모두 포함) 4천만원 초과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이익, 4,000만원 이하까지의 금융소득 (이자·배당)
사업소득	모든 자유직업적 사업소득(3%)	외국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연 300만원(총액으로 보면 연 1,5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연금소득	연 600만원 초과 연금소득	연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